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02호 2021. 12. 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5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341호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공고 ----- 8
- 삼척시 공고 제1359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11
- 삼척시 공고 제1372호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삼척시 공고 제1373호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20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30.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326-34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4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제로 3326-34	20211130	가설건축물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제)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19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86-5	2021113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지번	주소	지번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마리 1412	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문의재로 3326-34	2건	20211130	가설건축물	20090904	자연지명명칭 반영(문의재)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테리 19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386-5		20211130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1 -20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2948-147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88-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2948-147	20211203	가설건축물	20090626	지형지물 (가곡천)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17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349	20211203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 (옥원,이천) 복합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개	계	개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88-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2948-147	20211203	가설건축물	20090626	가설건축물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175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349	20211203	가설건축물	20090626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삼척시 공고 제2021-1341호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방역에 대응한, 온라인 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삼척시장

1. 개최목적 :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2. 공고기간 : 2021. 12. 01. ~ 2021. 12. 31.

3. 개최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 온라인 영상 게시 및 의견청취

※ 삼척시 홈페이지 : <https://www.samcheok.go.kr/intro/00443/02081.web?gcode=1002&idx=110511&amode=view&>

4. 설명회 영상자료 게시기간 : 2021. 12. 01. ~ 2021. 12. 31.

5. 실시계획의 개요

순번	지구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량		비고
				필지수	면적(㎡)	
계	19개 지구			4,951	2,622,528	
1	남양1지구	2022.01.01. ~ 2023.12.31.	남양동 111-1번지 일원	459	237,024	
2	덕산1지구		근덕면 덕산리 75-1번지 일원	657	217,059	
3	신기1지구		신기면 신기리 75번지 일원	614	340,553	
4	상거노5지구		미로면 상거노리 254번지 일원	245	310,830	
5	하정1지구		미로면 하정리 78번지 일원	278	257,992	
6	하정2지구		미로면 하정리 28-1번지 일원	162	103,868	
7	도계2지구		도계읍 도계리 311-2번지 일원	153	35,066	
8	도계3지구		도계읍 도계리 269-2번지 일원	276	66,876	
9	전두2지구		도계읍 전두리 49-1번지 일원	147	53,998	

순번	지구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량		비고
				필지수	면적(m ²)	
10	호산3지구	2022.01.01. ~ 2023.12.31.	원덕읍 호산리 179-1번지 일원	83	14,219	
11	호산4지구		원덕읍 호산리 144-6번지 일원	157	58,573	
12	마달2지구		마달동 58-1번지 일원	168	205,904	
13	마달3지구		마달동 110-1번지 일원	99	270,404	
14	교동7지구		교동 597-1번지 일원	121	36,247	
15	교동8지구		교동 651번지 일원	105	20,376	
16	정하2지구		정하동 28번지 일원	191	57,194	
17	갈남2지구		원덕읍 갈남리 1-3번지 일원	405	141,221	
18	임원3지구		원덕읍 임원리 59-3번지 일원	352	76,539	
19	월천1지구		원덕읍 월천리 205번지 일원	279	118,585	

6. 주민의견 제출

가. 대 상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기한 : 공고종료 후 7일 이내

다. 제출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라. 제출방법

- 온라인 : 담당자 이메일(amado249@korea.kr), 삼척시 홈페이지 게시판
- 방 문 :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기 타 : 우편, 팩스, 전화(033-570-3871~3) 등

7. 기타사항

기간 내 제출된 의견서는 검토 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570-38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설명자료 1부.

2.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1부.

3. 의견서 1부. 끝.

■ 지적재조사사업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	------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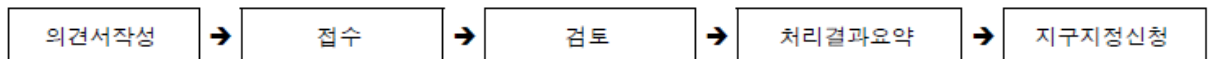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 리 접 차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삼척시 공고 제2021 -1359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도로 원덕305호 자양곡(임원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6.

삼척시장

1. 사업의 개요

○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원덕읍	농도	자양곡선	원덕305	안덕읍 임원리 산12	안덕읍 임원리 산	6.00	임원리	6.0	6.0	차로 폭 확장 도로공사

- 사업량 : L=1.178km, B=4.0m
- 사업기간(예정) : 고시일 ~ 2022. 12.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삼척시청 / 삼척시 중앙로 296

2.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시간	열람기간
농어촌도로 원덕305호 자양곡(임원리) 도로확포장공사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033-570-3489)	09:00 ~ 18:00	2021. 12. 6. ~ 2021. 12. 26. (20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12. 6. ~ 2021. 12. 26.(20일간)
-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로 제출

※ 토지세목조서의 편입면적은 도면에서 구적된 면적으로 추후 지적공사 분할측량 후 면적 증감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033-570-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평면적 (m2)	소유자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1	임원덕읍리	산113	임	24,910	36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3길**	김*도
2	"	산83	임	37,753	244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60-**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72. 10* ***	장*복 장*기
						김포시고촌읍인항로210번길24-**	장*란
						삼척시원덕읍 임원안4길12-**	장*철
3	"	산82	임	27,097	388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3길 **	이*갑
4	"	산16	임	22,711	264	경북예천군 호명면 새말길 **-2 경북예천군 호명면 새말길 **-2	최*상 최*경
5	"	산15	임	4,875	92	강원도강릉시구정면금평로5**-8	남*욱
6	"	산15-4	임	4,062	260	강원도강릉시구정면금평로5**-8	남*욱
7	"	산15-1	임	966	191	강원도강릉시구정면금평로5**-8	남*욱
8	"	산15-2	임	968	2	경기도부천시조사로170번길8*,101 동1008호 (소사본동,한신아파트)	박*길
9	"	산14	임	23,207	403	경북예천군 호명면 새말길 ** 경북예천군 호명면 새말길 **	최*상 최*경
10	"	산13-2	임	19,576	238	삼척시원덕읍임원리 **	박*덕
11	"	산1	임	7,517,580	2		국(산림청)
12	"	1156	답	255	26	경기도광주시경춘대로1422번길**, 202동***호	이*태
13	"	1157	답	147	5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60-**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72. 1**동 ***호	장*복 장*기
						김포시고촌읍인항로210번길24-**	장*란
						삼척시원덕읍 임원안4길12-**	장*철
14	"	1158-2	답	946	10	삼척시 임원리 973-*	이*갑
15	"	1164-1	답	1,055	213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45-**	신*열
16	"	1165-6	대	689	1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길6**	정*나
17	"	1165-5	대	467	7	경기도부천시소사로170번길** 101동10**호	박*길
18	"	1172-2	대	656	18	삼척시 임원리 7* 번지	박*덕
19	"	1157-1	도	99	61		국(산림청)
20	"	1158-1	도	1,031	109		국(건설부)
21	"	1165-2	도	198	24		국(산림청)
22	"	1165-1	도	2,946	960		국(기획재정부)
23	"	1172-1	도	426	121		국(건설부)
24	"	1271-1	도	1,491	90		국(건설부)
25	"	1208-125	전	63,984	812		국(기획재정부)
26	"	1219	전	7,488	143		국(건설부)
소 계		26필지		7,765,583	4,720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농어촌도로 원덕305호 자양곡(임원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장 위치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13 ~ 임원리 1219	
의견제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의견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청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21-1372호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삼척시장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도입 및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 등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2조)

구분	현행	조정	증감
정원	932명	938명	+6명 (기준인건비 승인 정원)

나.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안 별표4)

구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채정기준	현행	100%	0.6% 이내	5.8% 이내	25.0% 이내	32.0% 이내	29.0% 이내	7.1% 이상	0.5% 이내
	조정	100%	0.6% 이내	5.8% 이내	24.5% 이내	32.5% 이내	29.0% 이내	7.1% 이상	0.5% 이내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5)

- 기관별 정원

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현행	932	460	13	140	93	226
조정	938	462	17	140	93	226
증감	+6	+2	+4			

- 직급별 정원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경력관 문관			
현행	932	1	897	5	49	214	288	254	83	4	6	27	1
조정	938	1	903	5	49	215	290	255	85	4	6	27	1
증감	+6		+6			+1	+2	+1	+2				

라.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8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2) 전화 : 033-570-3240

3) 팩스 : 033-570-3133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제4항”을 “제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32명”을 “93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19명”을 “92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3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125조부터 제134조</u>----- ----- ----- ----- ----- -----.</p>
<p>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각각 설치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8조(설치) ① ----- ----- <u>제126조</u>-----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p> <p>② (생략)</p>	<p>제15조(설치) ① 법 제127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p> <p>② (생략)</p>	<p>제18조(설치) ① ----- <u>제7조</u> <u>제1항·제4항</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32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919명</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p>	<p>제22조(정원의 총수) ----- ----- ----- <u>938명</u>----- -----.</p> <p>1. ----- <u>921명</u></p> <p>2. ----- <u>17명</u></p>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1-1373호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삼척시장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도입 및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본청 실·과의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부행정기관(읍·면·동장)의 직급 조정(안 별표 4)

- 도계읍장 직급 조정

구분	현행	조정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나. 본청 실·과장 사무분장 조정(안 별표 5)

현행		조정	
부서	분장사무	부서	분장사무
전략사업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에 의한 특구 지정	에너지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구 관련 사무
복지정책과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재난안전과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복지정책과	저소득자녀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	-

다. 기관·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9)

- 기관별 정원

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현행	932	460	13	140	93	226
조정	938	462	17	140	93	226
증감	+6	+2	+4			

- 직급별 정원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경력관			
현행	932	1	897	5	49	214	288	254	83	4	6	27	1
조정	938	1	903	5	49	215	290	255	85	4	6	27	1
증감	+6		+6			+1	+2	+1	+2				

라. 본청 실·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다른 규칙(사무전결 규칙)의 개정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8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2) 전화 : 033-570-3240

3) 팩스 : 033-570-3133

4.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및 별표 5,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삼척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단위업무별 처리사항(본청)의 에너지과 단위업무명 4.산업연구 시설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진흥국	에너지과	4. 산업연구시설 관리	1.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 지원	기안			○		
			2. 소방방재산업 연구단지 지원업무	기안			○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구 관련 사무	기안				○	

별표 중 2. 단위업무별 처리사항(본청)의 전략사업과 단위업무명 6. 지역혁신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진흥국	전략사업과	6. 지역혁신사업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안					○
			2. (삭제)						

별표 중 2. 단위업무별 처리사항(본청)의 복지정책과 단위업무명 4.란을 삭제한다.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